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 입 · 세 출 예 산 총 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		200,621,130	6,018,634
1. 일 반 회 계		186,201,503	5,586,045
2. 특 별 회 계		14,419,627	432,589
기 타	(1)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2,180,076	65,402
	(2)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517,207	15,516
	(3)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6,231,116	186,933
	(4)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	168,145	5,044
	(5)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 별 회 계	1,887,113	56,613
	(6)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937,572	28,127
	(7) 발 전 소 주 변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	313,429	9,403
	(8) 피산청결고추상설직판장 특 별 회 계	498,000	14,940
	(9) 농 공 단 지 관 리 특 별 회 계	270,494	8,115
	(10) 주 차 장 운 영 특 별 회 계	180,799	5,424
	(11)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 별 회 계	1,235,676	37,07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4 조 2006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11,162천원으로 한다.